

부속서 7-가-4

대한민국

제7.7조, 제7.13조,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가. 서비스 분야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주 해

1. 아래의 약속 목록(이하 “이 양허표”라 한다)은 제7.7조 및 제7.13조에 따라 자유화되는 서비스 분야, 그리고 유보에 의해 그러한 분야에서 유럽연합 당사자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을 표시한다. 이 양허표는 다음 요소로 구성된다.

- 가. 대한민국에 의해 약속되는 분야 또는 하위 분야, 그리고 유보가 적용되는 자유화의 범위를 표시하는 첫 번째 열
 - 나. 첫 번째 열에 표시된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서 제7.5조 및 제7.11조에 적용 가능한 유보를 기술하는 두 번째 열
 - 다. 첫 번째 열에 표시된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서 제7.6조 및 제7.12조에 적용 가능한 유보를 기술하는 세 번째 열, 그리고
 - 라. 서비스 분야에서의 국경 간 서비스 공급 및 설립에 영향을 미치면서 제7.5조 및 제7.11조와 제7.6조 및 제7.12조에 따른 양허표 작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조치에 대한 구체적 약속을 기술하는 네 번째 열
-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나 이 양허표에 언급되지 아니한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서의 서비스 공급은 약속되지 아니한다.

2. 제7.5조 및 제7.11조와 제7.6조 및 제7.12조 모두에 불합치하는 조치는 제7.5조 및 제7.11조와 관련된 열에 기재된다. 이 경우, 그 기재는 또한 제7.6조 및 제7.12조에 대한 조건 또는 제한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¹⁾

1) 이 항의 목적상, 제7.6조 및 제7.12조에 따라 규정된 대우는 대한민국이 당사국이고 이 협정의 서명 후 발효될 자유무역협정에서 약속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다.

3. 네 가지 다른 공급형태가 이 양허표에 표시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양해된다.

가. “1) 국경 간 공급”의 공급형태는 제7.4조제3항가호1목에 따라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의 서비스 공급으로 양해된다.

나. “2) 해외소비”의 공급형태는 제7.4조제3항가호2목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의 서비스 공급으로 양해된다.

다. “3) 상업적 주재”의 공급형태는 제7.9조가호에 따라 설립을 통한 서비스 공급으로 양해된다.

라. “4) 자연인의 주재”의 공급형태는 제7.17조에 따라 영업 목적의 자연인의 일시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으로 양해된다.

4. 제7.11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의 법적 형태의 유형에 대한 비차별적 요건은 대한민국에 의해 유지되거나 채택되기 위하여 이 양허표에 명시될 필요가 없다.

5. 대한민국은 제7.7조 및 제7.13조에 따라 자유화되지 아니하는 경제활동에서 핵심인력,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에 대하여 제7.18조 및 제7.19조에 따른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아니한다.

제7.18조 및 제7.19조에 따라 행해진 핵심인력,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에 관한 대한민국의 약속은 그들의 일시적 주재의 의도 또는 효과가 노사 분쟁 또는 협상에 개입하거나 달리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시민권, 거주 또는 고용과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다.

입국 및 일시적인 체류가 허용된 핵심인력, 대출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는 대한민국의 이민 및 노동 법을 준수한다.

6. 개별 분야 및 하위 분야를 적시함에 있어, **CPC**란 제7.25조에 대한 각주 27에 언급된 중앙품목분류를 말한다.

7. 자격 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그리고 면허 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제7.5조 및 제7.11조와 제7.6조 및 제7.12조의 의미에서의 시장접근 또는 내국민대우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 이 양허표는 그러한 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예를 들어, 면허 취득 필요, 보편적 서비스 의무, 규제되는 분야에서의 자격인정 획득 필요, 언어 시험을 포함하여 특정한 시험 통과 필요 및 경제활동이 수행되는 영역에 법적 주소를 보유할 필요)는, 비록 열거되지 아니하더라도, 유럽연합 당사자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8. 제7.1조에 따라, 이 양허표는 정부지원 용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의해 제공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9. 이 양허표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자기 집행적인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수평적 양허			
<p>“약속 안함*”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의 부족을 이유로 약속하지 아니함을 말함.</p> <p>“**” CPC 코드 번호 위의 이중 별표는 이 양허표상의 해당 서비스 하위 분야가 주어진 CPC 코드 번호에 따라 분류된 서비스 하위 분야의 일부 또는 일부들만을 포함하는 것을 표시함.</p>			
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	<p>3) 다른 쪽 당사자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에너지 및 항공 등의 분야에서 기존 국내 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음.</p> <p>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 및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된 조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²⁾³⁾</p> <p>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소수 민족과 같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집단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조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⁴⁾</p> <p>국가 고유의 비밀정보 또는 정부의 규제기능 및 권한행사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록한 모든 국가소유의 전자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 이 유보는 금융서비스 관련 지급 및 결제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아니함.</p>	<p>1)2)3) 총포, 도검, 화약류의 제조, 사용, 판매, 보관, 운반, 수입, 수출 그리고 소지를 포함하여 총포, 도검, 화약류 분야와 관련한 조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1)2) 사업 서비스에 대하여, 통제되는 상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수출 및 재수출과 관련한 조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3) 토지 취득은 다음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a) 외국인토지법상 외국기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기업의 토지취득은 허용됨, 그리고</p> <p>(b) 외국인토지법상 외국기업으로 간주되는 기업과 외국기업의 지점의 토지취득은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조건으로 하여 다음의 정당한 사업 목적으로 허용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적인 사업 활동과정 중 서비스 공급에 사용되는 토지 - 해당 법령상 기업 고위임원의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또는 - 해당 법령에 규정된 토지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2) 이 유보는 과거 민간기업이었으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3) 이 유보의 목적상, “공기업”은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도 포함함.

4) 경제적 취약집단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조치는 비차별적 방식으로 적용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4)⁵⁾ 핵심인력 및 상용서비스판매자 “자연인의 상용 일시 주재”에 관한 제4절에 따른 약속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u>대출연수생(GT)</u></p> <p>아래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p> <p>CPC 861, CPC 862, CPC 863, CPC 851, CPC 853, CPC 82201**, CPC 82202**, CPC 82203**, CPC 82204**, CPC 82205**, CPC 82206**, CPC 83104, CPC 832, CPC 86761**, CPC 86763**, CPC 86769**, CPC 633, CPC 8861, CPC 8862, CPC 8863, CPC 8864, CPC 8865, CPC 8866, CPC 874**, CPC 7512**, 통신서비스, CPC 8929**를 제외한 유통서비스, 교육서비스, CPC 9401**, CPC 9402**, CPC 641, CPC 642, CPC 6431**, CPC 7471, CPC 87905, CPC 96191, CPC 96192, CPC 962, CPC 7472, CPC 7211, CPC 7212, CPC 7111, CPC 7112, CPC 71233**, CPC 9702, ISIC 개정판 3.1⁶⁾: 011, 012, 013, 015.</p>	<p>4) 토지취득은 토지 임차권 허용 외에는 약속 안함.</p>	

5) 핵심인력, 대출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에 대한 이러한 제한은 설립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적용됨. 대출연수생에 대한 제한 중 이중별표를 가진 CPC 코드에 관하여, “약속 안함”의 범위는 “II. 분야별 구체적 약속”의 관련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서의 약속 범위와 동일함.

6) 이 양허표에 기재된 “ISIC 개정판 3.1”이란 국제연합 통계국 통계문서 시리즈 M, N° 4, 2002년 발간 ISIC 개정판 3.1에 규정된 “모든 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말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 분야별 구체적 약속			
1. 사업서비스			
A. 전문직서비스			
<p>a. 법률서비스 (CPC 861)</p> <p>다음을 제외함.</p> <p>(i) 법원 및 다른 정부기관에서의 사법 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그러한 절차를 위한 법률 문서의 준비</p> <p>(ii) 공증 증서의 준비 위탁을 위한 법적 대리</p>	<p>1)2)3) (a)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만이 법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p> <p>대한민국에서 개업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사무소는 해당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개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함. 공증인의 사무소는 해당 공증인이 개업하는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함.</p> <p>변호사만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개설할 수 있음.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이러한 법적 실체에 투자할 수 없음.</p>	<p>1)2)3) 시장접근 열 (b)에 명기된 것과 동일한 제한이 적용됨.</p>	<p>1. 국제상사중재에서의 대리는 중재에서 적용 가능한 절차법과 실체법이 외국법자문사가 대한민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법이거나 국제 규범인 경우에 허용됨.</p> <p>2. 원자격국 직명의 본국 언어로의 사용이 허용됨. 다만, 한글로 “외국법자문사”라는 직명과 함께 사용되어야 함.</p>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i) 노동 분야 자문서비스 또는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적재산권, 광업권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타 권리의 취득, 상실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행위, 그리고	(b) (a) 7)에서 공급이 허용된 법률서비스 외의 법률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다만, 다음을 제외함. (i)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유럽연합 회원국 법무회사(로펌)가 대한민국에 대표사무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유럽연합 회원국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 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에 관하여 외국법자문사로서 대한민국에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 그리고 (ii) 이 협정 발효일부터 2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하여금 대한민국 법무회사(로펌)와 특정한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3. 회사이름의 사용은 허용됨. 단, 한글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라는 명칭과 함께 사용되어야 함.
(iv)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가족관계 또는 상속에 관한 법률 사건에 관한 행위			

7) 대한민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a) 외국에서 변호사에 상응하는 법률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로 하여금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형태로라도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한 자격 부여, 승인, 등록, 허용, 감독 및 그 밖의 요건에 대한 제한. (b) 외국에서 변호사에 상응하는 법률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로 하여금 대한민국 변호사, 법무회사(로펌), 법률사무,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와 동업, 상사연합, 제휴 또는 법적 형태를 막론하고 그 밖의 어떠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제한. (c) 외국에서 변호사에 상응하는 법률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로 하여금 대한민국 변호사, 법률사무,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제한. 그리고 (d) 제7장의 각주 16 및 2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법률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iii) 이 협정 발효일부터 5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유럽연합 회원국 법무회사(로펌)가 대한민국 법무회사(로펌)와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한민국은 그 합작기업의 의결권 또는 지분 비율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러한 합작기업은 일정한 요건 아래 대한민국 변호사를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고용할 수 있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자연인의 이동은 상업적 주재와 관련하여서만 허용된다.</p> <p>외국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 지역의 법 및 국제공법에 관한 법률자문서비스만 허용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아래 정보는 오직 투명성 목적으로만 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대한민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동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최소 3년 동안 법률사무에 종사하였어야 하고, 그 관할국의 법조계에서 유효하고 적정하게 종사하고 있어야 함.대한민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인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이 있어야함. 동 대표사무소는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외국법 자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됨. 동 대표사무소는 신용과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하며,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함. 대표사무소의 대표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쌓은 3년의 경력을 포함하여 최소 7년 동안 법률실무에 종사하였어야 함.대표사무소는 이윤추구행위를 할 수 있음. 다만, 대한민국에의 주재는 적절한 사업계획과 재정기반을 유지하여야 함.이 분야의 약속의 목적상, 유럽연합 회원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조직되어 유럽연합 회원국에 본사를 둔 법무회사(로펌)만이 한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음.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지사, 현지 사무소, 현지법인 또는 합작기업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법무회사(로펌)의 어떠한 종류의 종속적 또는 의존적 법적 실체도 대한민국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음.외국법자문사는 일 년에 최소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것이 요구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회계, 감사 및 회계장부 정리 서비스 (CPC 862)	<p>1)2)3) (a)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대한민국에 설립한 개인 사무소,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유한회사)만이 회계 및 감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등록자가 아닌 자는 이러한 법적 실체에 투자할 수 없음.</p> <p>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서비스는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만이 공급할 수 있음.</p> <p>(b) (a)⁸⁾에서 공급이 허용된 회계 및 감사 서비스 외의 회계 및 감사 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다만, 다음을 제외함.</p> <p>(i)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다음을 허용함.</p> <p>a)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 등록한 유럽연합 회원국 공인회계사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 대한민국에 설립한 사무소를 통하여 그들이 등록한 관할 지역의 회계법 또는 국제 회계법 및 기준에 대한 회계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 그리고</p> <p>b)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등록된 유럽연합 회원국 공인회계사가 대한민국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함.</p>	<p>1)2)3) 시장접근 열 (b)에 명기된 것과 동일한 제한이 적용됨.</p>	<p>1)2)3) 대한민국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는 연회비를 납부하고, 전 세계적인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국제회계조직의 회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p> <p>대한민국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에 대하여는 회원계약을 통하여 다음의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음.</p> <p>(i) 외국회계기준 및 회계감사에 대한 자문</p> <p>(ii) 공인회계사연수</p> <p>(iii) 감사기법전수, 그리고</p> <p>(iv) 정보교환</p>

8) 대한민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a) 외국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대한민국 공인회계사(등록된 대한민국의 공인회계사) 고용 제한. (b) 외국 공인회계사의 대한민국 내 감사서비스 제공 제한. (c) 제7장의 각주 16 및 2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ii) 이 협정 발효일부터 5년 이내, 대한민국은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 등록한 유럽연합 회원국 공인회계사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대한민국 회계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p> <p>a) 대한민국 공인회계사가 대한민국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함. 그리고</p> <p>b) 유럽연합 회원국에 등록된 유럽연합 회원국 공인회계사 1인은 대한민국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10퍼센트 미만까지 보유할 수 있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4) 본국의 법에 따라 공인회계사로 등록되고, 국제회계법인에 고용된 자연인이 상기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허용됨.</p> <p>이러한 인력의 입국 및 체류는 최장 1년까지 허용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세무서비스 (CPC 863)	<p>1)2)3) (a)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대한민국에 설립한 세무사무소,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 회사)만이 세무조정서비스 및 세무대리서비스를 포함한 세무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세무사 등록자가 아닌 자는 이러한 법적 실체에 투자할 수 없음.</p> <p>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 회사)만이 세무조정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p> <p>(b) (a)⁹⁾에서 공급이 허용된 세무서비스 외의 세무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다만, 다음을 제외함.</p> <p>(i)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다음을 허용함.</p> <p>a) 유럽연합 회원국 법에 따라 등록된 유럽연합 회원국 세무사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법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이 대한민국에 설립한 사무소를 통하여 그들이 등록된 관할 지역의 세법 또는 국제세법 및 세제에 대한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p> <p>b)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 등록된 유럽연합 회원국의 세무사가 대한민국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는 것</p>	1)2)3) 시장접근 열 (b)에 명기된 것과 동일한 제한이 적용됨.	

9) 대한민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a) 외국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의 대한민국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고용 제한. (b) 외국 세무사의 대한민국 내 세무조정 또는 세무대리 서비스 제공 제한. (c) 제7장의 각주 16 및 2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된 세무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ii) 이 협정 발효일부터 5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 등록된 유럽연합 회원국 세무사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대한민국 세무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p> <p>a) 대한민국 세무사가 대한민국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함. 그리고</p> <p>b) 유럽연합 회원국에 등록된 유럽연합 회원국 세무사 1인은 대한민국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10퍼센트 미만까지 보유할 수 있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건축설계서비스 (CPC 8671)	1) 상업적 주재 ¹⁰⁾ 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2)4)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건축사와의 공동계약에 의한 외국건축사의 건축설계서비스 공급은 허용됨. 본국의 법에 따라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정규 6개 건축사 시험과목 중 2개 과목인 (i) 건축법규와 (ii) 건축설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간단한 시험만 합격함으로써 대한민국 건축사 자격 취득이 가능함.
e. 엔지니어링서비스 (CPC 867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0) 상업적 주재는 법인일 필요 없음.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통합엔지니어링서비스 (CPC 867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도시계획 및 경관건축 서비스 (CPC 867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수의료서비스 (CPC 932) 수산질병관리사 포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a. 컴퓨터설비 설치관련 자문서비스 (CPC 84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소프트웨어 시행서비스 (CPC 84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CPC 84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CPC 84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기타 (CPC 845, 84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C. 연구개발서비스</u>			
a. 자연과학 연구개발서비스 (CPC 85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해양과학조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대한민국 기업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전에 허가 또는 동의를 획득해야 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사회·인문과학 연구개발서비스 (CPC 85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학제간 연구개발서비스 (CPC 85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D. 부동산서비스</u>			
중개서비스 (CPC 82203**, 82204**, 82205**, 82206**)	<p>1)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p> <p>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감정평가서비스 (CPC 82201**, 82202**)	<p>1)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p> <p>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토지 가격 책정과 수용에 대한 보상 등 정부의 권한행사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감정평가서비스는 제외			
<u>E.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서비스</u>			
a. 선박 관련 (CPC 83103)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대한민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대한민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항공기 관련 (CPC 83104)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인 지분참여 50퍼센트 미만의 합작투자에 한하여 허용.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회사의 대표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그 밖의 운수장비 관련 (CPC 83101, 83105**) ¹¹⁾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관련 (CPC 83106-831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기타 개인·가정용품 관련 임대서비스 (CPC 83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1) 83105**: CPC 83105 중 15인승 미만의 승합차에 한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기타 사업서비스			
a. 광고서비스 (CPC 8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서비스 (CPC 86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경영컨설팅서비스 (CPC 86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프로젝트 경영 및 기타 경영 서비스 (CPC 86601, 866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성분·순도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1**) ¹²⁾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업적 주재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 심사에 의함. 주요 심사 기준: 기준의 국내 공급자의 수 및 이들에 대해 미치는 영향, 공중 보건, 안전 및 환경의 보호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물리적 성질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2)	1)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기술적 진단서비스 (CPC 8676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통합 기계 및 전기 시스템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3**, 86769**) ¹³⁾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2) 86761 : CPC 86761 중 대기, 수질, 소음 수준 및 진동 수준에 대한 검사, 시험 및 분석만을 포함.

13) 86763, 86769 : CPC 86763, 86769 중 전기제품에 대한 검사 및 분석 서비스만을 포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자문서비스 (CPC 8811**, 88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가금류감별서비스 (CPC 88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임업 부수 서비스 (CPC 8814**), 항공에 의한 산불진화 및 병해충방제 서비스를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어업 관련 자문서비스 (CPC 88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h. 광업 부수 서비스 (CPC 88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제조업 부수 서비스: 신제품 제조 기술 관련 자문서비스만 포함 (CPC 884** 및 885**, 단 88411, 88450, 88442, 88493은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k. 직업소개서비스 (CPC 87201**, 87202**)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한 직업 소개는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상법상의 회사 형태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직업소개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목적의 주석

- 회사는 노동부장관에 의해 결정되고 공표된 서비스 요금에 대한 규정을 준수함.
- 회사는 5천만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으로 설립됨. 서비스 공급자가 추가로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사업소당 2천만원 씩 총 납입자본금이 가산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1. 조사 및 경비 서비스 (CPC 873)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이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투명성 목적상, 대한민국에서는 아래 5가지 종류의 경비서비스만이 허용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시설경비 (b) 호송경비 (c) 신변보호 (d) 기계경비, 그리고 (e) 특수경비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m. 과학, 기술 관련 자문서비스 지질학적, 지구 물리학적 및 그 밖의 과학적 예측서비스 (CPC 86751) 지각조사서비스 (CPC 86752)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지표조사서비스 (CPC 86753**) 지적 측량과 관련된 서비스는 제외	<p>1)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지도제작서비스 (CPC 86754**) 지적도 관련 서비스는 제외	1)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n. 장비의 유지 및 보수 (CPC 633, 8861, 8862, 8863, 8864, 8865, 886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o. 빌딩청소서비스 (CPC 874**, 단, 87409 제외)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p. 사진서비스 (CPC 875)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q. 포장서비스 (CPC 87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r. 1) 인쇄 (CPC 88442**) ¹⁴⁾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4) 88442 : CPC 88442 중 스크린인쇄, 그라비어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r. 2) 출판 (CPC 88442**) 신문, 정기 간행물 출판서비스는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s. 국제회의서비스 (CPC 879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속기서비스 (CPC 879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t. 번역 및 통역 서비스 (CPC 8790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전문디자인서비스 (CPC 87907)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2. 커뮤니케이션서비스 <u>B. 쿠리어서비스</u> 특급배달서비스 ¹⁵⁾ 를 포함하는 쿠리어 서비스 (CPC 7512**) 우편법 ¹⁶⁾ 상 대한민국 우정당국이 배타적 권리 ¹⁷⁾ 를 가지는 신서의 수집, 처리 및 배달 서비스는 제외 대한민국 우정당국의 배타적 권리는 우편망 및 그 운영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함. 이 약속은 자기의 책임 하에 고용하여 운송서비스를 운영하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함. 이 약속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공운항면장 및 항공기를 보유한 배달 사업자에게의 항공 운항권 부여를 포함하지 아니함.	1) 서비스의 제공은 항공 및 해로운송형태로 제한됨. 2) 제한 없음. 3) 국내 쿠리어 공급을 위한 화물운송업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내 쿠리어서비스 사업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피인수자가 보유한 면허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조건 하에 영업을 영위하는 한, 신규 화물운송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서비스의 제공은 항공 및 해로운송형태로 제한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5) “특급배달서비스”란 신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서, 인쇄물, 소포, 상품 및 그 밖의 품목의 수집, 운송 및 배달로서, 서비스 공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그 품목을 추적하고 그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함.

16) 그러나 우편법 시행령 제3조는 민간사업자가 다음을 포함한 상업서류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 (a) 화물에 첨부한 봉하지 아니한 서류 또는 송장, (b) 무역 관련 서류, (c) 외자 또는 기술 관련 서류, 그리고 (d) 외국환 또는 그 관련 서류.

17)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a) 군복무자 또는 이와 동등한 신분을 지닌 자가 우체국에 대한 지원업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b)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부처에 속하는 차량 정수의 결정과 우체국에 그 차량을 배정함에 있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C. 통신서비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음성전화서비스 b. 패킷교환데이터 전송서비스 c. 회선교환데이터 전송서비스 d. 텔레스서비스 e. 전신서비스 f. 팩시밀리서비스 g. 전용회선서비스 o. 기타 <p>디지털셀룰러서비스 무선호출서비스 PCS(개인통신서비스) TRS(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 무선데이터서비스 IAS(인터넷접속서비스) PSTN(공중교환전화망)과 연결된 VoIP(인터넷전화)서비스</p>	<p>1) 모든 서비스 공급은 허가받은 대한민국 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조건으로 함.</p> <p>이 협정 발효일부터 2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상업적 약정 없이 위성 서비스를 통한 텔레비전 및 라디오 신호 전송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¹⁸⁾을 허용함.</p> <p>2) 제한 없음.</p> <p>3)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또는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하여 부여됨.</p> <p>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외국인은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없음.</p> <p>기간통신사업 허가는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제법인¹⁹⁾ 모두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부여되거나 보유될 수 없음.</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18) 이 서비스는 오직 위성에 의한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신호의 전송에 필요한 방송사업자 간 중계 연결을 구성하는 네트워크서비스로 정의됨. 따라서, 이 서비스는 위성서비스의 임대를 포함하나 위성을 통해 일반대중에게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프로그램 패키지를 판매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함. 그리고, 이 서비스는 국내간 연결(위성에 의한 이러한 신호의 국내 영역으로부터 국내 영역으로의 전송)은 포함하지 아니함.

19) “외국인의 제법인”이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대한민국의 관련 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이 최대주주이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함. 다만, 그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제법인은 모두가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함.</p> <p>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제법인은 KT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음. 다만, 그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제법인이 KT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p> <p>이 협정 발효일부터 2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다음을 허용함.</p> <p>(a) 외국인의 제법인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간통신사업자²⁰⁾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보유하는 것. 단, KT와 SK텔레콤은 대상에서 제외함. 그리고</p> <p>(b) 외국인의 제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최대 100분의 100까지 보유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것</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0) “기간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한 공급자를 말함. “별정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하지 아니하고(그러나 스위치, 라우터 또는 멀티플렉서는 소유할 수 있음)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설비”를 통하여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말함. 전송설비란 송신 지점과 수신 지점을 연결하는 유선 또는 무선 전송설비(회선설비를 포함)를 말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부가서비스²¹⁾</u> h. 전자메일 i. 음성메일 j.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k. 전자적 데이터 교환 l. 축적 및 전송, 축적 및 검색 포함한 고도 부가가치 팩시밀리 서비스 m.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n.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처리(거래 처리 포함) o. 기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및 원격 컴퓨팅 서비스 ²²⁾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부가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데이터 전송서비스 공급을 허용함. ²³⁾

21) “부가서비스”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한 통신망설비를 통하여 제공되며,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여 전송하거나 처리하여 전송하는 통신서비스를 말함.

22)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및 원격 컴퓨팅 서비스는 제3자 통신을 매개하는 통신서비스를 포함하지 아니함.

23) 형태 또는 내용의 변경 없이 이용자의 데이터를 전송 및/또는 교환하는 통신서비스(음성전화, 텔레스, 팩시밀리 서비스 및 임대회선의 단순재판매는 제외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통신 관련 서비스</u> a. 장비임대서비스 (CPC 7541) b. 통신단말장비의 도소매 서비스 (CPC 754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건설서비스 (CPC 511-518)	1) CPC 5111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CPC 5111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유통서비스²⁴⁾			
A. 위탁중개인서비스 (CPC 621, 단 62111, 62112 및 선물계약의 위탁중개인서비스는 제외)	1) 의약품 및 의료상품은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4) 다음 서비스는 제외함.

(a) 총포·도검, 및 화약류 거래

(b) 예술품 및 골동품, 그리고

(c) 다음의 개설 및 운영과 다음에 서의 유통서비스

(i) 지방 당국이 공영도매시장으로 공식 지정한 농축수산물 공영도매시장

(ii)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공의법인이 개설 및 운영하는 농수산물공판장, 그리고

(iii)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 및 운영하는 가축시장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세계무역기구 관세율 할당의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 또는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u>도매서비스</u> (CPC 61111, 622**, 다만, 62211 중 곡물도매업, 62223 및 홍삼 도매업은 제외) ²⁵⁾	<p>1) 의약품, 의료상품, 기능성 식품 및 공급형태 3상 제한 대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다음의 서비스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a) 중고자동차 도매업 그리고 (b) 가스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p> <p>주요 기준 : 합리적인 가격의 형성, 수급 균형을 위하여 기존 공급업체의 수와 이들에 미치는 영향,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질서 있는 상행위. 또한, 인구밀도, 교통, 환경오염, 지역적 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징과 공공의 이익.</p> <p>주류 도매업을 하는 자는 관련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함.</p> <p>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입된 지정 한약재의 도매유통에 대한 수급조절을 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25) 천연가스의 도매거래는 설립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모든 분야 - 가스 산업” 하에 기재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소매서비스 (CPC 61112, 61130, 61210, 613** (LPG 관련 소매거래 및 주유소사업 제외), 631** (담배, 쌀, 홍삼 제외), 632)	<p>1) 의약품, 의료상품, 기능성 식품 및 공급형태 3상 제한 대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중고자동차 및 가스 연료에 대한 소매서비스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 기존 국내 공급자의 수와 이들에 미치는 영향, 인구밀도, 교통, 환경오염, 지역적 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징과 공공의 이익.</p> <p>전화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됨.</p> <p>안경사(안경사 또는 겸안사) 면허를 받은 자연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개설한 자만이 안경사 또는 겸안사 영업에 종사할 수 있음.</p> <p>안경사(안경사 또는 겸안사)만이 영업을 위한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안경사 1인당 1개의 영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음.</p> <p>의약품 소매서비스(한약재 포함)를 공급하는 자는 약국을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으며, 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LPG 관련 소매거래 및 주유소 사업</u>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u>프랜차이징</u> (CPC 8929**) ²⁶⁾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6) 프랜차이징 서비스는 이 양허표의 도매 및 소매서비스 분야에서 허용된 품목에 한정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5. 교육서비스²⁷⁾			
C. 고등교육서비스 ²⁸⁾ (CPC 923**) 학위 수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공인평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립고등 교육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고등교육서비스 다음을 제외함. (i) 보건 · 의료 관련 고등교육 (ii) 유아 · 초등 · 중등 교원양성 고등교육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비영리 학교법인 ²⁹⁾ 만이 장관의 인가를 얻어 고등교육기관 설립이 가능. 다만 사내대학은 학교법인 설립 불필요. 첨부 1에 기재된 교육기관의 형태만 가능. 수도권지역 ³⁰⁾ 에 사내대학을 제외하고 고등교육기관 신설, 확장 또는 이전은 제한될 수 있음.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사립고등교육기관 이사 정수의 50퍼센트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다만, 고등교육기관 기본재산액 ³¹⁾ 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출연한 경우,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까지 외국인으로 구성할 수 있음.	

27) 모든 서비스 공급 형태를 통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관한 구체적 약속은 대한민국에서 전문적 직업활동을 위한 입학, 등록 및 자격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학위 인정에는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함.

28) 고등교육기관의 형태는 고등교육서비스에 관한 첨부 1에 기재됨.

29) “학교법인”이란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정규교육기관을 설립할 목적으로만 설립되는 비영리 법인을 말함.

30) “수도권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함.

31) “기본재산”이란 부동산,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및 학교법인의 회계년도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을 말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i) 법학전문대학원 그리고 (iv) 방송통신 대학 및 사이버 대학	<p>현지 고등교육기관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고등 교육기관 또는 외국정부나 외국공인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고등교육기관에 한하여 교육과정의 공동운영이 가능함.</p> <p>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의료인, 약사, 수의사, 한약사, 의료기사, 유아·초등·중등교원을 위한 고등교육 분야의 연간 학생정원 및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의 총수를 제한할 수 있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D. <u>성인교육서비스</u>³²⁾ (CPC 924**)</p> <p>사립성인교육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성인교육서비스 다음을 제외함.</p> <p>(i) 학력을 인정하거나, 국내외 학점, 학위, 졸업장을 수여 하거나 또는 이와 연계된 교육서비스</p> <p>(ii)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 법 및 선원법에 따라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직업훈련 서비스</p> <p>(iii) 방송을 통한 교육서비스, 그리고</p>	<p>1) 보건·의료 관련 성인교육서비스는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성인교육기관의 형태는 다음으로 한정됨.</p> <p>(a) 평생 및 직업교육 관련 성인대상 학원³³⁾ 그리고</p> <p>(b) 학력 인정 또는 학위 수여 목적 외의 성인 평생교육시설로서</p> <p>(ii) 사업장, 시민사회단체, 학교, 언론 기관에 부설된 것,</p> <p>(ii) 지식·인력 개발 사업과 관련된 것 또는</p> <p>(iii) 온라인 평생교육시설과 관련된 것이면서 성인대상으로 설립된 것</p>	<p>1) 보건·의료 관련 성인교육서비스는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32) 성인교육기관의 형태는 성인교육서비스에 관한 첨부 2에 기재됨.

33) 이 제한의 목적상, “성인대상 학원”이란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10명 이상에게 평생 또는 직업교육 관련 과목에 관한 교습과정을 제공하는 시설임.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v) 정부가 위임한 권한에 따라 기관이 제공하는 직업훈련서비스	<p>수도권 지역에서 총 건평 3,000 평방미터 이상의 성인교육시설의 신설, 확장 또는 이전은 제한될 수 있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성인대상 학원에 강사로 고용되는 외국인은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동등 학력소지자로서 국내에 거주하여야 함.</p>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6. 환경서비스			
다음 분야별 약속에 기재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내의 서비스를 제외한 CPC 9403 및 CPC 9406에 따른 서비스에 관련하여, 관련 법 및 규정에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하여 사적 공급을 허용하는 경우, 제7.6조 및 7.12조(내국민대우)의 의무는 민간 당사자간 계약에 따른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형태 1부터 3에 대하여 적용됨.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7.5조 및 제7.11조(시장접근)의 의무는 그러한 서비스에 적용되지 아니함.			
A. 폐수서비스			
산업폐수 수집 및 처리 서비스 (CPC 9401**)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비산업폐수 수집 및 처리 서비스 (CPC 9401**)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이 협정 발효일부터 5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비산업폐수서비스 관련 관리계약을 위한 경쟁절차에서 유럽연합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비차별적인 대우를 부여함. 이전 문단에도 불구하고, 중앙 또는 지방 차원에서의 동 서비스 공급은 공공 독점 또는, 예를 들어 양허계약을 통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공공 당국은 다음의 가능성을 보유함. (a) 배타적 권리의 적용 (b) 서비스 관리계약의 자유로운 선택 (c) (공개경쟁 여부와 관계없이) 배타적 권리 부여 방식의 선택, 그리고 (d) 하나의 관리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의 변경(예를 들어, 양허계약 종료시 공공 독점으로의 복귀)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B. 폐기물처리서비스</u> 산업폐기물처리서비스 (CPC 9402**) ³⁴⁾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C. 기타</u> 배기ガ스 정화 및 소음저감 서비스 (CPC 9404, 9405) 환경시험평가서비스 (CPC 9406**, 9409**) ³⁵⁾ 토양 및 지하수 정화 (CPC 940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환경컨설팅서비스 (CPC 94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4) 9402**: CPC 9402 중 산업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

35) 9406**, 9409**: CPC 9406 및 9409 중 환경영향평가 서비스만 해당

금융서비스 분야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대한민국 양허표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	--------------	--------

7. 금융서비스

두주(頭註): 모든 금융서비스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 제7.11조에 대한 대한민국의 약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 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인은 법적 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을 조건으로 함.³⁶⁾
- 제7.11조 및 제7.12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약속은, 외국인 투자자가 대한민국에서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설립하거나 이에 대한 지배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서는 본국에서 동일한 금융서비스의 하위 분야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소유하거나 지배한다는 제한을 조건으로 함.
-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최고경영자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 함.
- 대한민국이 자신의 영역에 소재한 인, 그리고 소재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소재하는 다른 쪽 당사자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금융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그러한 허용은 대한민국이 그러한 공급자에게 자신의 영역에서 영업을 하거나 구매권유를 허용하도록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대한민국은 이 의무의 목적상 “영업” 및 “구매권유”를 정의할 수 있음. 다만, 그러한 정의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한 약속과 불합치하여서는 아니 됨.
- 대한민국은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한 그 밖의 건전성 규제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에 대하여 등록 또는 인가를 요구할 수 있음. 그리고 대한민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정보 또는 통계 목적으로만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그 공급자가 공급해 온 금융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대한민국은 공개할 경우 그 공급자의 경쟁상의 지위를 저해할 비밀 영업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임.

36) 이 두주(頭註)는 그 자체로 다른 쪽 당사자의 금융서비스공급자의 지점 또는 자회사 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달리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6. 양 당사자는 현재 조직된 대로, 다음 기관이 제7장의 적용을 받으나 그 장의 목적상 금융서비스 공급자로 간주되지 아니함을 확인함³⁷⁾: 한국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³⁸⁾</p> <p>7. 대한민국은</p> <p>(a) 다음 금융서비스 공급자 중 하나 이상에(통칭하여 “정부지원기관”)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농업협동조합, 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 <p>(b)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특별대우를 부여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지원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정부지원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 유사한 상태에 있는 비정부지원기관보다 더 큰 규모의 자본 대비 채권을 발행하도록 허용- 정부지원기관이 입은 손실의 보전- 자본, 잉여, 이익 또는 자산에 대한 특정조세의 면제 <p>8. 한국주택금융공사,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최고 및 차상급 경영책임자 및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p> <p>9.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자연인 또는 대한민국에 설립된 법인이 이 양허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강제적인” 제3자 보험을 구매할 법적 의무를 충족하였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외국 영역에서 그 자연인 또는 그 법인에게 공급된 어떠한 “강제적인” 제3자 보험서비스도 고려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함. 그러나 그 요구되는 보험이 대한민국에 설립된 보험업자로부터 구매될 수 없는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도, 법적 의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음.</p>			

37)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7장은 이 항에 명시된 실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채택 또는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함.

38)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험서비스의 공급을 포함하는 이 항의 목적상,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은 금융서비스공급자로 간주되지 아니함. 위의 두주에도 불구하고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은 금융위원회에 의해 감독되는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제7장이 적용되는 금융서비스공급자로 간주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10.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정부소유 또는 정부지배기관을 민영화하는 경우에, 대한민국은 이 기관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계속적인 보증 또는 한시적인 추가 보증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함.</p> <p>11. 대한민국은 외국 투자자의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함. 한국거래소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 대한민국은 외국인에 의한 관련 기관의 주식보유를 제한할 권리를 유보함. 다만, 대한민국은 (a) 공모의 시점에서 외국인의 소유지분에 대한 이해관계가 보호되고, (b) 공모 이후, 그 거래소 또는 그 결제원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 설립되고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제되고 감독되는 유럽연합 당사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접근을 확실히 하도록 보장함.</p>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A.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³⁹⁾			
	<p>1)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위성을 포함함).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함. 운송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ii)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b) 재보험 및 재재보험 (c) 상담, 위험평가, 계리,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d) 중개 및 대리와 같이, 위 (a)와 (b)에 기재된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중개서비스 <p>2)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위성을 포함함).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함. 운송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ii)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p>1)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위성을 포함함).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함. 운송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ii)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b) 재보험 및 재재보험 (c) 상담, 위험평가, 계리,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d) 중개 및 대리와 같이, 위 (a)와 (b)에 열거된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중개서비스 <p>2)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위성을 포함함).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함. 운송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ii)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39) “컨설팅”이란 기업전략구축, 마케팅 전략, 또는 상품 개발 전략에 대한 자문 제공과 같은 활동을 말함. “위험평가”란 위험 분석, 위험 예방 또는 난해하거나 이해적인 위험에 관련된 전문가 자문과 같은 활동을 말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b) 재보험 및 재재보험 (c) 상담, 위험평가, 계리,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p> <p>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법인이 “강제적인” 보험에 가입할 법적 의무를 충족하였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그러한 인이 외국의 영역에서 공급받은 서비스는 고려되지 아니함.</p> <p>그러나 그 요구되는 보험이 대한민국에 설립된 보험업자로부터 구매될 수 없는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도 법적 의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될 수 있음.</p> <p>3) 상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또는 증권회사의 2인 이하의 직원만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 투명성을 위하여, 하나의 은행 소재지에서 보험판매에 전적으로 할당된 창구수와 같은 보험상품의 판매방식이 제한될 것이며, 단일 보험업자에 의하여 인수될 수 있는 보험의 은행판매비율에 대한 제한이 부과될 것임.</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b) 재보험 및 재재보험 (c) 상담, 위험평가, 계리,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p> <p>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법인이 “강제적인” 보험에 가입할 법적 의무를 충족하였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그러한 인이 외국의 영역에서 공급받은 서비스는 고려되지 아니함.</p> <p>그러나 그 요구되는 보험이 대한민국에 설립된 보험업자로부터 구매될 수 없는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도 법적 의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될 수 있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			
	<p>1)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a) 금융 정보의 제공 및 이전⁴⁰⁾, 그리고</p> <p>(b)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2년 이내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자유무역 협정에서 유래한 유사한 약속의 발효일 이내에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련한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p> <p>(c) 중개를 제외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 이 약속은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증권과 관련한, 신용평가, 신용조회 및 조사, 일반펀드사무관리, 간접투자기구 평가 및 채권 평가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됨. 이 약속은 (i) 대한민국 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또는 (ii) 대한민국 내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의 대부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신용조회 및 조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대한민국은 일단 이러한 서비스의 일정 부분의 공급을 허락한 이후에는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함.</p>	<p>1)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a) 금융 정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p> <p>(b)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2년 이내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자유무역 협정에서 유래한 유사한 약속의 발효일 이내에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련한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p> <p>(c) 중개를 제외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 이 약속은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증권과 관련한, 신용평가, 신용조회 및 조사, 일반펀드사무관리, 간접투자기구 평가 및 채권 평가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됨. 이 약속은 (i) 대한민국 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또는 (ii) 대한민국 내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의 대부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신용조회 및 조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대한민국은 일단 이러한 서비스의 일정 부분의 공급을 허락한 이후에는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함.</p>	

40)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절에서 언급되는 “금융 정보”는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간행물 안에 포함되거나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금융 또는 사업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2)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연인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거주자,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의 지점은 대한민국에서 인가를 취득한 선물회사를 통해서만 해외 선물, 옵션 및 특정 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p> <p>3) 다음 종류의 업무는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 서비스공급자의 지점에 의하여 수행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신용협동조합 (b) 상호저축은행 (c) 여신전문금융회사 (d) 종합금융 (e) 외화 및 원화자금증개 (f) 신용정보 (g) 일반사무관리회사 (h)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그리고 (i) 채권평가회사 <p>대한민국에서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비금융기관은 현지법인으로만 설립할 수 있음.</p> <p>대한민국 원화 현물환 거래의 은행 간 중개업은 기존의 두개의 중개업자로 제한됨.</p>	<p>2)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연인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거주자,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의 지점은 대한민국에서 인가를 취득한 선물회사를 통해서만 해외 선물, 옵션 및 특정 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p> <p>3)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은, 그러한 금융기관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⁴¹⁾”인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음.</p> <p>투명성을 목적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금융위원회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에 의한 소유권의 승인 여부에 대하여 이 협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기준을 적용함. (b) 자연인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c) 주요 사업이 금융서비스가 아닌 금융기관 외의 기업체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4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그 기업체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능력을 포기하는 경우, 소유권의 비율을 10퍼센트까지 증가시킬 수 있음. 	

41)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은 대한민국의 관련 규제당국이 수용 가능한 등급으로 국제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평가된 금융기관 또는 대한민국의 관련 규제당국이 수용 가능한 대체방식에 의하여 그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입증된 금융기관을 포함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한국거래소만이 대한민국에서 증권 또는 선물시장을 운영할 수 있음.</p> <p>한국예탁결제원만이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상장 및 비상장 증권의 예탁자로서 또는 대한민국의 증권회사 계정 간의 그러한 증권의 이전 매개체로서 기능할 수 있음.</p> <p>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거래소만이 한국거래소에서 상장되거나 거래되는 증권 및 파생상품에 대하여 청산 및 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대한민국에서의 각 지점 설치는 개별 인가를 요구함. 외국의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현지법인의 지점은 그러한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함.</p> <p>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또는 증권회사의 대한민국 지점은 운영자금을 대한민국 내로 가지고 와서 이를 유지해야 함. 이러한 자금은 그러한 지점에 의하여 조달될 자금액 또는 대출될 대부금액을 결정할 목적으로 사용됨.</p> <p>은행법 및 증권거래법의 목적상, 그러한 지점은 다른 국가의 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또는 증권회사와는 별도의 법적 실체로 간주됨.</p> <p>대한민국은 주택청약저축계정과 같은 주택계정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금융기관의 수를 제한할 수 있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9.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A. <u>호텔 및 레스토랑</u> (CPC 641, 6431**) 단, CPC 6431 중 철도·항공운송 관련 시설서비스는 제외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음식제공서비스 (CPC 642)	<p>1) 항공운송 관련 시설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항공운송 관련 시설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B. <u>여행알선대행서비스</u> (CPC 7471)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C. <u>관광안내서비스</u> (CPC 7472)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10.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 서비스			
A. <u>엔터테인먼트서비스</u> (CPC 96191, 96192)	<p>뮤지컬, 연극, 라이브 밴드, 오페라 등 개인 아티스트나 그룹에 의하여 행해지는 엔터테인먼트서비스</p>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B. <u>뉴스제공서비스</u> (CPC 962)	<p>1)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는 연합뉴스사와 같이 무선국 허가를 받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통신사와의 계약 체결을 통한 방법으로만 뉴스통신을 공급할 수 있음.</p> <p>2) 제한 없음.</p> <p>3)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의 국내설립은 기사취재 목적일 경우에만 가능함.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사 또는 지국은 대한민국 내에서 뉴스통신을 배포할 수 없음.</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뉴스통신사의 대표자 (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 또는 편집인 또는 연합뉴스사 또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음. (a)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또는 (b)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대한민국 국적자</p>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에서 뉴스통신사업을 할 수 없음.</p> <p>(a) 외국정부 (b) 외국인 (c)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d) 외국인이 100분의 25 이상의 비율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p> <p>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국 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p> <p>(a)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b)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c)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u>레크리에이션파크</u> <u>서비스</u> (CPC 96491 단, CPC 96191, 96192 및 해변서비스 제외)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11. 운송서비스			
<u>A. 해운서비스</u> 국제운송 (CPC 7211, 7212) 연안운송제외	1) (a) 정기선 해운: 제한 없음. (b) 벌크선, 부정기선 및 그 밖의 국제해운: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대한민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 (i) 국제여객해운: 약속 안함. (ii) 국제화물해운: 제한 없음. (b) 다른 형태의 상업적 주재: 제한 없음. 4) (a) 선박승무원: 약속 안함. (b) 항만 노무자: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제한 없음. (b)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항구에서의 다음 서비스는 국제해상운송공급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함: 1. 도선 2. 예선 지원 3. 식량·연료 공급 및 급수 4. 쓰레기 수거 및 밸러스트 폐기물 처리 5. 선석배정 6. 항행원조 7. 통신, 급수, 전기공급 등 선박 운영에 필수적인 육상기반 운영서비스 8. 비상보수시설 9. 정박, 접안지 및 선박접안 서비스

주석 :

관련 국내법상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이 양허표는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간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 연안운송을 포함하지 아니 함.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에 규정된 대륙붕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해운 부수 서비스</u> 해상화물취급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항만내 창고업 (CPC 74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통관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해운대리업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해상화물운송주선서비스 (CPC 748**) ⁴²⁾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해운중개서비스 (CPC 748**, 749**) ⁴³⁾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선박 유지 및 보수 ⁴⁴⁾ (CPC 8868)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2) CPC 748 중 자기의 명의 (계약상 외국주선인 포함)로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서비스.

43) CPC 748**, 749** : CPC 748 및 749 중 해상화물운송중개 또는 선박의 대여, 용대선, 매매를 위한 중개서비스.

44) 해상여객 운송사업, 해상화물 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위하여 제공되는 선박 수리 및 관리, 선원 관리 및 해상보험과 같은 서비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선원포함 선박대여 (CPC 721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대한민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대한민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예선서비스 (CPC 7214)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대한민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대한민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검수 · 검정 · 검량 서비스 (CPC 745**) ⁴⁵⁾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5) 검수 · 검정 · 검량 서비스는 해상운송 분야에만 적용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항공운송서비스 ⁴⁶⁾ 컴퓨터 예약시스템 (CRS)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항공서비스 판매 및 마케팅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항공기 유지 및 보수 (CPC 8868 중 일부)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6) 항공운송서비스에 관한 GATS 부속서의 정의에 따름.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승무원포함 항공기임대 (CPC 734) ⁴⁷⁾	<p>1) 대한민국 항공사가 사용하는 항공기는 대한민국에 등록되어야 함.</p> <p>등록되기 위하여 항공기는 특정 국적요건을 충족하는 자연인 또는 자본 및 통제에 관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소유할 것이 요구될 수 있음.</p> <p>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등록된 항공기의 리스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충족될 수 없는 대한민국 항공사의 예외적인 필요, 계절적 운영능력 수요, 또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특정한 상황에서 유럽연합의 항공사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대한민국 항공사에게 대한민국으로부터 제한된 기간 동안 승인받을 것을 조건으로 리스할 수 있다.</p> <p>3) 대한민국 항공사가 사용하는 항공기는 대한민국에 등록되어야 함.</p> <p>등록되기 위하여 항공기는 특정 국적요건을 충족하는 자연인 또는 자본 및 통제에 관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소유할 것이 요구될 수 있음.</p> <p>항공기는 특정 국적요건을 충족하는 자연인 또는 자본 및 통제에 관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항공사가 운영하여야 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대한민국 항공사가 사용하는 항공기는 대한민국에 등록되어야 함.</p> <p>등록되기 위하여 항공기는 특정 국적요건을 충족하는 자연인 또는 자본 및 통제에 관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소유할 것이 요구될 수 있음.</p> <p>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등록된 항공기의 리스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충족될 수 없는 대한민국 항공사의 예외적인 필요, 계절적 운영능력 수요, 또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특정한 상황에서 유럽연합의 항공사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대한민국 항공사에게 대한민국으로부터 제한된 기간 동안 승인받을 것을 조건으로 리스할 수 있다.</p> <p>3) 대한민국 항공사가 사용하는 항공기는 대한민국에 등록되어야 함.</p> <p>등록되기 위하여 항공기는 특정 국적요건을 충족하는 자연인 또는 자본 및 통제에 관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소유할 것이 요구될 수 있음.</p> <p>항공기는 특정 국적요건을 충족하는 자연인 또는 자본 및 통제에 관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항공사가 운영하여야 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47) 이 서비스는 포괄임차에 한정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지상조업서비스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철도운송서비스 a. 여객운송 (CPC 7111)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현재 운영중인 노선은 약속 안함. 새로운 노선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철도산업의 질서와 규율의 확립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b. 화물운송 (CPC 7112)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철도 유지 및 보수 (CPC 8868 중 일부) ⁴⁸⁾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철도운송 부수 서비스 (CPC 741의 일부, CPC 7113의 일부) ⁴⁹⁾			

48) 철도 유지 및 보수 서비스에 대한 약속은 민간소유철도시설에만 적용됨.

49) 철도운송 부수 서비스에 대한 약속은 민간소유철도시설에만 적용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u>도로운송서비스</u>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허가는 국제해운회사에만 부여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화물은 수출 또는 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한정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b. 운영자 포함 비정기 버스 임대 (CPC 71223)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c. 도로장비 유지 및 보수 (CPC 8867의 일부, CPC 6112의 일부)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상업적 주재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G. <u>파이프라인 운송</u> (CPC 7131**) 오직 석유제품 운송에 한정 ⁵⁰⁾ , LPG 운송을 제외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H. <u>모든 형태의 운송</u> <u>부수 서비스</u> b. 항만구역 외의 창고업 (CPC 742**) 농·축·수산물에 대한 서비스는 제외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u>기타 운송서비스</u> 복합운송서비스 철도화물 주선 ⁵¹⁾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2. 기타 서비스 b. 머리미용 및 기타 미장 서비스 (CPC 970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50) 천연가스의 파이프라인 운송은 설립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모든 분야--가스 산업”에 기재됨.

51) “철도화물 주선”이란 컨테이너 화물의 수집, 한국철도공사와 철도화물 운송을 위한 계약, 화물적재/하역 및 배달 등을 포함하는 철로 운송의 끝 지점에서 수행되는 부수서비스

첨부 1

(고등교육서비스)

고등교육기관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전문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라 2년부터 3년까지의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2. 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라 4년부터 6년까지의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3. 산업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라 산업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4. 기술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문인력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2년의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5. 사내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라 근로자를 교육하고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 동등한 학위 또는 졸업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설립·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

스를 말함.

첨부 2

(성인교육서비스)

성인교육기관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10명 이상에게 평생교육 또는 직업교육 관련된 다음의 과목을 교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학교, 도서관, 박물관, 직원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 등의 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운전학원은 제외된다.
 - (a)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섬유 및 의복, 광업 자원, 국토 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공예, 환경, 교통, 안전관리
 - (b)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 (c)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상담, 텔레마케팅
 - (d)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코디네이터
 - (e) 컴퓨터: 컴퓨터, 게임, 로봇,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 (f) 문화 및 관광: 출판, 영상 및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상품, 관광
 - (g) 간호보조: 간호조무사
 - (h) 경영 및 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 (i) 국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 (j) 인문사회: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공무원시험
 - (k) 기예: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꽃공예, 만화, 연극, 모델, 화술, 마술, 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바둑, 웅변

(1) 독서실⁵²⁾: 학교 교과 교습 학원 교습 과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독서실

2.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거나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이 되거나 아니면 교육과학기술부에 신고가 된 시설을 말한다. 평생성인교육시설은 성인을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사업장, 시민단체, 학교, 그리고 언론기관에 부설된 평생교육시설, 지식 및 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및 온라인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52) 사람들이 공부하기 위하여 가는 장소